

- 홍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(안) 승인 관련 -

충 청 남 도 협 의 의 건 및 조 치 계 획

2015. 10.

홍 성 군

구 분	검 토 의 견	조치 결과 또는 계획	비 고
자연재난과	◦ 하천분야 국·공유재산 편입시 별도 협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 ◦ 사업구역내 지방하천 편입시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, 하천 설계기준 및 하천점용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여 설계시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. ◦ 하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의 의제 사항 중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‘하천공사 시행의 허가’, 제33조 제1항의 ‘하천의 점용허가’ 사항에 대하여는 홍성군 하천관련부서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. ◦ 사업구역내 소하천에 대하여는 소하천 관리청인 홍성군 해당부서와 별도협의 하여야 합니다.	☞ 향후 세부 사업계획시 사업부지내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재산(도로, 하천 등)의 유·무상귀속 등 협의는 해당 시·군 재산관리부서와 별도 협의하겠음. ☞ 차집관거 신설 등 사업시행시 지방하천 편입되는 경우 하천설계기준 및 점용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여 별도 협의하겠음. ☞ 하천공사 시행시 하천관련부서와 별도 협의하겠음. ☞ 사업부지내 소하천 구역이 포함된 경우 홍성군 해당부서와 별도 협의하겠음.	
관광사업과	◦ 『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』에서 제시한 관광정책 방향과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연계 반영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, ◦ 남당 관광지에 대한 하수량 산출시 충분한 검토가 되어 관광지 개발에 따른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☞ 홍성군은 『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』상 내포문화 관광권에 해당하며 남당관광지 개발사업 등을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음. ☞ 본 계획에서 남당관광지의 하수량 산출은 『남당관광지 개발계획승인 신청서』에 의거하여 산정하였으며, 향후 사업규모 변경으로 하수량 변경이 있을시 이를 고려하여 처리시설 계획을 변경하겠음.	

구 분	검 토 의 견	조치 결과 또는 계획	비 고
환경정책과	「하수도법」 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 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설치 공사중 처리능력이 1일 1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·승인 전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 하여야 함.	☞ 금회 계획시 홍성군내 10㎥/일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은 없음.	
농촌마을 지원과	-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등 - 본사업과 관련, 농업기반시설이 완료된 우량농지의 편입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분할이 최소화 - 또한, 편입되는 농지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·농지분야 협의를 농지전용 업무처리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서식에 의거 받아야 하며,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농업 생산기반시설(용·배수로 등)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대체시설 설치 시 시설관리자와 별도 협의 - 인근 농지에 대하여는 농기계 진·출입로를 충분히 확보 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-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 -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이 편입(변경)될 경우 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」 제30조(무상귀속), 제13조(사용허가), 제19조(용도폐지)의 규정에 의거 시장·군수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. -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관리 - 상기 사업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이 편입(변경)되어 시설폐지가 필요한 경우, 「농어촌 정비법」 제24조에 의거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시장·군수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함.	☞ 향후 세부 사업시행시 우량농지의 편입 및 농지 분할을 최소화 하도록하겠음. ☞ 향후 세부 사업시행시 농지를 편입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농지분야협의를 시행하고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겠음. ☞ 향후 세부 사업시행시 농지를 편입하는 경우 농기계의 진출입로를 확보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. ☞ 향후 세부 사업시행시 사업부지내 국유재산이 편입되는 경우 소유 국유재산(도로, 하천 등)의 유·무상귀속 등 협의는 해당 시·군 재산관리부서와 별도 협의 후 군수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음. ☞ 향후 세부 사업시행시 농업기반시설의 시설폐지가 필요한 경우 군수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음.	

구 분	검 토 의 견	조치 결과 또는 계획	비 고
건설정책과	◦ 하수처리인구, 계획하수량, 정비기본방향 등은 홍성 군기본 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계획간 환류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합니다. ◦ 하수처리구역을 2단계(2025년)까지 확대하고, 개발계획 확 정된 사회적 인구가 하수처리구역 내로 유입되어 기준연도 55.7%인 하수도보급률이 2025년 73.8%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, 2단계 이후로는 집행계획이 없고 자연적 인구감 소로 인해 하수도보급률이 오히려 감소할 예정이므로 하수 도보급률 증가를 위한 대책 재검토가 필요함. ◦ 공공하수도 중 간선기능을 갖는 하수관 및 공공하수처리시 설(500㎥/일 이상)은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43조 규정에 의거 다른 시설계획 및 시설과 상충되지 않 도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사업 시행하시기 바랍니다.	☞ 계획지표 산정시 군기본계획과의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향후 계획간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충실히 검토하였으나, 군기본계획상 개발계획중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에 준하지 않는 사업은 배제하였음. ☞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준하여 소규모 마을들 이 이격되어 산재되어 있는 홍성군의 지역적 여건상 공 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여 처리하는 것은 경제성에서 매우 불리함. 향후 정비기본계획 수립시 2단계까지 처리 구역 확장 완료 후 홍성군의 개발여건 변동에 대해서 보 급률 확대 계획을 수립하겠음. ☞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차집관거 공사시 다른 도시기 반시설과 상충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사 업 시행을 하도록 하겠음.	
도로교통과	◦ 사업구간내 지방도, 국지도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 우,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.	☞ 사업시행시 지방도 및 국지도 굴착이나 도로점용을 행하 는 경우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와 별도 협의를 추진하 겠음.	